

1. 개정이유

KC마크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KC마크 표시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방법에 KC마크 도안을 표시할 수 없음을 규정하는 단서 신설(안[별표 9]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9 제1호나목5) 중 “안전인증표시”를 “안전인증등의 표시”로 하고, 같은 표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호가목의 도안을 표시해서는 아니 되며, 제1호나목의 1), 4)에 따른 표시 요령도 적용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표 9] 안전인증, 안전확인신고, 공급자적합성확인,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1. 안전인증, 안전확인신고, 공급자 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가. 도안 <생 략> 나. 표시 요령 1) ~ 4) <생 략> 5) 제품의 표면에 <u>안전인증표시를</u>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 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 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 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.	[별표 9] 안전인증, 안전확인신고, 공급자적합성확인,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1. 안전인증, 안전확인신고, 공급자 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가. 도안 <현행과 같음> 나. 표시 요령 1) ~ 4) <현행과 같음> 5) -----<u>안전인증등의 표시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3.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방법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법 제28조의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사항을 제1호나목의 2), 3), 5), 6)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3.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방법 ----- ----- ----- -----. <u>다만, 제1호가목의 도안을 표시해서는 아니 되며, 제1호나목의 1), 4)에 따른 표시 요령도 적용되지 아니한다.</u>
--	---